

신구조문대비표
「선원법」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원법 [법률 제14508호, 2016.12.27., 일부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원법 [법률 제14803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</p>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7. ~ 2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2. “유능부원”이란 <u>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 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.</u></p> <p>7. ~ 22. (현행과 같음)</p>